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67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최기상 · 안도걸 · 이수진
강준현 · 이성윤 · 김 윤
권칠승 · 이해식 · 유동수
김영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인상, 고용안정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위 기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간 주택 자가점유율 격차 및 소

특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등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노후화 심화 등으로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제29조의8, 제85조의6, 제87조제2항, 제88조의2제1항 및 제106조제1항4호의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6.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료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추가시설설치 용역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
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
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
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
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
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⑥ ~ ⑧ (생략)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
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2030년 1
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

-----2030년 12월 31일-----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2030년 12월 31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② -----

2030년 12월 31일-----

<p>5. ~ 13. (생략)</p> <p>② ~ ⑤ (생략)</p>	<p><u>위한 수선유지용역(추가시설 설치 용역을 포함한다)</u></p> <p>5. ~ 1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